

# 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”의 주요 개정 내용 (합성수지 재질 제품을 중심으로)

## 1.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(동법시행령 제10조)

-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제품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
  -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, 유독물 제품
  -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1차 플라스틱 제품, 건축용, 포장용, 기계 장비 조립용, 기타 플라스틱 제품,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인형 · 장난감 · 오락용품, 사무 · 회화용품, 가구제품, 끈 · 로프, 라이터, 칫솔, 면도기(전기식 제외)
-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제품 · 재료 · 용기 :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, 연구기관 · 단체가 수입한 경우,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플라스틱 제품, 수입업자가 미화 9천불 미만의 플라스틱제품 을 수입한 경우,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

## 2.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 이행

- 재활용 의무 생산자(동법시행령 제19조)

제작은 의무생산자	규모
EPS, PSP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	
EPS, PSP 포장재를 이용한 농수축산물(상표 부착 제품) 출하 및 수입, 판매업자	연간매출 10억원, 수입액 3억원 이상 사업자
PSP 포장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	
발포합성수지(EPS, EPP, EPE)를 원충포장재로 한 전자제품 제조, 수입업자	
EPS 포장상자 제조업자	

- 재활용 방법의 선택

재활용 의무량 이행을 위해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사업자에게 재활용 위탁,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량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고,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

## 3. 재활용사업자(동법시행령 제20조)

-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품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는 자
  -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



-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
-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
- 재활용 지정 사업자
- 재활용 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

#### 4.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·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(동법시행규칙 제13조)

- 폐 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, 성형제품의 제조, 내화제품 또는 섬유 코팅제품의 제조,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
- 폐 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, 성형제품 제조, 유류 제조, 고형연료제품 제조, 에너지 회수 기준에 적합한 재활용,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

#### 5.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총량의 산정(동법시행령 제22조, 제23조)

- 재활용 의무 총량 = (전전년도의 총 재활용량 + 전년도의 재활용 의무 총량)/2 + (전전년도의 총 출고량 - 전전년도의 총 재활용량) x 0.1 x 재활용 여건 계수
- 사업자별 재활용 의무량 = 총 출고량 중 사업자의 출고량 비율 x 재활용 의무총량

#### 6. 재활용 비용(동법시행령 제27조)

품목	종별 및 규격	재활용 기준비용(원/kg)
음식료품류, 농수축산물, 세제류, 화장품류, 의약품류, 부탄가스제품, 실충실균제 등 합성수지재질 포장재	PE, PP, PS, PSP, ABS, 폴리아크릴릭 등 단일재질 포장재	327
	PET 단일재질 포장재	178
	EPS(발포폴리스티렌) 단일재질포장재	317
	PVC 단일, 복합재질 포장재	981
	합성수지 복합재질 포장재	467
전자제품 완충재, 농수축산물 상자	발포합성수지 단일, 복합 재질 포장재	317

#### 7.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(동법시행령 제28조)

-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 단위비용의 1.15~1.3배의 가산 금액을 곱하여 산정

재활용의무량 미이행율(%)	5% 이하	5%초과 15% 이하	15% 초과 30% 이하	30% 초과
부과금	115/100	120/100	125/100	130/100